

『농어가목돈마련저축』 특약

제1조(적용범위)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탁금거래기본약관, 적립식예탁금약관,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,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(저축방법 및 저축한도)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(이하 "이 저축" 이라 한다)의 연간저축가입 최고한도는 144만원으로 하되, 저소득 농어민은 120만원으로 한다.

② 매회 저축납입금의 최소액은 월납저축은 5천원, 분기납저축은 1만5천원, 반년납저축은 3만원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원을 단위로 한다.

제3조(장려금 지급) 이 저축은 법령에 따라 계산한 저축장려금을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적립식예탁금약관 제8조의 거래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지급된 저축장려금이 있을 경우 환수 할 수 있다.

제4조(양도·질권설정) 이 저축은 양도할 수 없으며, 제3자를 위하여 질권설정 할 수 없다.

제5조(부정가입자에 대한 처리 및 장려금 환수) ① 저축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 자격 등을 위반하여 가입하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조합은 임의로 이 저축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①항에 의하여 해지 처리된 때에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지급된 저축 장려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②항의 환수금을 조합이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(법령 위반 시 처리)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